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391-4 / 전송 731-6730

문서번호 주개 58533 - 126

시행일자 1993. 4. 27 (목)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감조

3-
126

취급		시 장
보존	126	
주택국장	전결	영 10
주택개량과장	126	법무담당관 심사필
개량 1 계장	126	(고시안심사)
기안	이 인 제	협조통제관
		협조

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단순면적정정)지정 및 개선계획변경 수립(봉천11동 1지구)

1. 건설부고시 제936호(90. 12. 22)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83호(92. 3. 11)로 개선계획수립고시된 우리시 봉천11동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완지 설계에의한 면적이 당초면적과 상이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의거 변경(단순면적정정)지정하고.

2. 개선계획중 지구내 철거대상건물이 감소되도록 세부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4항 규정에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

3.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6조 5항의 규정에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 1. 고시안 1부. 끝.

2.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입안조서 1부

3. 주거환경개선계획서 변경(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재의뢰

1. 우리시 봉천1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별첨고시문 내용과 같이 고시하고자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전명 : 봉천1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단순면적정정)지정 및 개선계획변경 수립.

다. 법적근거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5항.

제 1 2 2
주택국장

첨부 고시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개발과장

제목 봉천1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단순면적정정)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보고

1. 건설부고시 제936호(90. 12. 22)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83호(92. 3. 11)로 개선계획수립고시된 우리시 봉천1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환지설계에 따른 면적이 당초면적과 상이하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의거 지구변경(단순면적정정)지정하고.

2. 개선계획중 지구내 철대상건물이 감소되도록 세부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4항규정에의거 변경 수립하였기.

3.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5항의 규정에의거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사본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도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제 4 안)

수신 관악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봉천1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단순면적정정)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고시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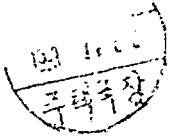
1. 주택58533- 561(93. 3. 30)호와 관련임.

2. 건설부고시 제936호(90. 12. 22)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83호(92.

의 보 단 - 127

3. 11)로 개선계획수립고시된 봉천1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지구변경(단순면적정정) 지정 및 개선계획변경하고, 고시하였기 통보하나.

2. 동내용을 일반인에게 보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것.



첨부 1. 고시문사본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도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봉천1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단순면적정정)지정 및 개선계획변경 수립고시통보

1. 건설부고시 제936호(90. 12. 22)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83호(92. 3.

11)로 개선계획수립고시된 봉천1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별첨내용과같이 지구변경(단순면적정정)지정 및 개선계획변경 수립 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도서 1부. 끝.

주택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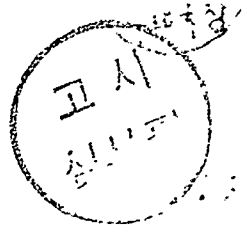
장

수신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138 116 호

서울특별시고시 제 1112-126 호

공 차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단순면적정정)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1. 건설부고시 제936호(90. 12. 22)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83호(93. 3. 11)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고시된 봉천1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규정에의거 지구 변경 (단순면적정정)지정하고,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 하였기
 같은법 제6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5항의 규정에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관악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1993. 4.

서울특별시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단순면적정정) 지정조서

지 구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봉천 11동 1 지구	관악구 봉천11동 186번지일대	7,750	7,792.1 7,750.1	증 42.1 감 42.1	도면변경없는 단순면적정정

※ 변경사유 : 환지설계에따른 지구계확인 및 편입면적 산정에의한 증가

원본대로 필기

나. 주거환경개선계획서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단위 : m²)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계	7,750	증) 42.1	7,792.1	100%	
택 지	5,601	증) 73	5,674	72.8	
도 로	1,790	감) 163.9	1,626.1	20.9	
구 거		증) 60	60	0.8	신 설
공 원	259	증) 56	315	4.0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노 인 정)	100	증) 17	117	1.5	

※ 변경사유 : 면적재산정 및 도로계획변경에따른 변경.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단위 : m²)

구 분	위 치	기 정	증 감	변경후	사용형태	비 고
어 린 이 공 원	봉천동 196-240번지일대	259	증)56	315	어린이 놀이터	기존공원 원존치

※ 변경사유 : 환지설계에따른 공원편입면적 산정으로 증가.

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단위 :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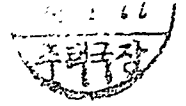
구 분	노 선 명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로3류1호	6	28	196 - 345	196 - 349	
기 정	소로3류2호	6	96	195 - 27	196 - 249	
기 정	소로4류 호	4	120	205 - 11	196 - 345	
변 경	"	4	126	1693 - 48	196 - 345	기점수정에의한 선형변경
기 정	소로4류2호	4	138	733 - 251	1639 - 48	
변 경	"	4	97	195 -55	1639 - 71	기점수정에의한 구간단축
기 정	소로4류3호	4	158	1639 - 71	1636 - 10	

※ 변경사유 : 철거대상건축물 감소를위한 선형변경

원 본 대 고 밑

다. 기타사항 변경없음

라.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도서(생략)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관악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동사무소 비치도서와 같음.



원본대조필

位 置 圖

